

공 시 Announcement 告示

아래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이 불허(不許)되었음을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e hereby announce that the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submitted by the person below has been rejected.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처분내용
VIETNAM	NGUYEN NHAT DUY	2005	M	체류기간연장 불허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effective date of Announcement.

(담당자 Officer in Charge : 김 민 범 ☎ 042-220-2001~4)

2026. 10. 1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Chief of DAEJEON Immigration Office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① 문서 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 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따른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송부할 문서 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公示送達)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시행령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